

1. 개정이유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,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
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“제19조에 따른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”에 대한 일몰
해제(안 제26조 삭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의 일몰 규제심사를 마침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총리령 제 호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6조(규제의 재검토) 공정거래</u> <u>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후원수</u> <u>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에</u> <u>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</u> <u>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</u> <u>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</u> <u>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</u> <u>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